

- (목적) 통일교육 활동을 통해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 위촉

* 관련 근거 :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제10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

- (규모) 총 15,000명 내외 * 제24기 : 1,000명

- o (국내) 초·중·고 교사 12,000명, 대학교수 1,000명 등 13,000명 내외

- o (해외) 한국학교 교사 200명, 한글학교 교사 1,800명 등 2,000명 내외

- (임기) 2년 (2026. 5. 1. ~ 2028. 4. 30. 예정) * 제24기 : '24.5월 ~ '26.4월

- (역할) △통일교육의 실시 △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△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*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제10조의2 제3항

- 통일부 지원 내용

- o 통일교육위원 위촉 시 통일부장관 명의 위촉장 수여, 통일교육 활동 경비, 유공자 정부 포상 등 활동 지원

* 통일교육위원이 자체 발굴한 지역사회 통일교육에 대한 활동 경비 지원

- o 통일교육 기본교재(북한 이해, 통일문제 이해), 이러닝(통일교육 공공과정), 원내 집합교육, 명사특강 등 교육 역량 강화 지원

- 위촉 절차 및 신청 방법

- o (위촉 절차) 외교부, 재외동포청은 해외 한글학교 대상 위촉 홍보, 한글학교 교사가 개별적으로 위촉 신청

- o (신청 방법) 한글학교 교사가 온라인(www.uniedu.go.kr) 등록(원칙)

- 또는 신청서류(붙임4, 서식 1~3호) 작성 후 우편·이메일* 제출 가능

* △(우편 보내는 곳) 01018 서울시 강북구 4.19로 123(수유동)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 △(이메일) juni@unikorea.go.kr

□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제10조의2(통일교육위원)

-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.
-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.
 1.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
 2.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
 3.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-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 1. 통일교육의 실시
 2.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
 3.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-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,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 1.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
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4. 사고 또는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시행령 제8조(통일교육위원)

-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.
-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